

업무협약서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과 대구대학교(이하 “대구대”라 한다)는 학술교류 및 우수 산업인력 양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위탁교육과 관련된 제반 학사관리 및 학점교류 등 상호 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협력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협동교류 프로그램 운영
2. 강사 지원 등 인적 자원의 상호 교류
3. 교육자료, 출판물 및 정보 상호 교류
4. 입학 조건 및 학비감면 협조
5. 시설 이용시 편의 제공 및 협조
6.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항

제3조(협동교류 프로그램) 「협동교류 프로그램」은 대구대에서 운영하는 위탁교육과정으로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위 및 연수과정을 의미한다.

제4조(학사 관리 및 운영) 학사관리 및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대구대 학칙에 따르며 별도의 시행세칙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5조(학비)

- ① 대구대는 공단 위탁생에 대해 학칙에 의거하여 학비를 전액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석사과정 및 공개과정 위탁생에게는 특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 방법) 양 기관은 상호 교류 및 협력에 있어 학칙 및 규정 등 양 기관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.

제7조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유효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타) 이 협정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11월 10일

대구대학교

총장홍덕률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이사장이일규